

착한임대인에 동참하면 재산세를 감면해 드립니다.

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

감면대상

- **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**
  *고급오락장, 사행행위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

감면내용

- **임대료 인하율 및 기간**에 따라 100% 미만을 한도로 감면
- **감면율(%) = [연간 임대료 인하액 / 연간임대료] × 100 × 추가가산율**
  *추가가산율 : 임대료 인하기간에 따라
  1개월 ~ 2개월 : **2배**, 3개월 ~ 6개월 : **3배**, 7개월 이상 : **4배**

임대료 인하기간

- **'22.1.1.~22.12.31. ▶ 2022년 재산세 감면 환급**

감면신청

- **2022년 재산세 ▶ 2023. 1. 2.부터 신청 (아래 서류 제출)**
  ① 지방세 감면신청서
 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
  ③ 임대료 인하합의 사실 증명서류(변경계약서, 약정서 등)
  ④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(세금계산서, 금융거래내역 등)
  ⑤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접수방법

- **우편·방문 접수**
  *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참조

문의사항

장안구 세무과 재산세팀 **031)228-5317, 5319**
팔달구 세무과 재산세팀 **031)228-7317, 7318**
권선구 세무과 재산세팀 **031)228-6318, 6319**
영통구 세무과 재산세팀 **031)228-8581, 8439**

수원시 |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